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한다.

1. 이 예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2.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 단,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가입 시 모바일 「나라사랑포털 App」에서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를 활용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가 우체국 스마트뱅킹에서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에서 본인의 분산 식별자(DID : Decentralized Identifiers)와 디지털증명서(VC : Verifiable Credentials) 사본을 제출해 상품 가입 자격을 검증하는 서비스

② 이 예금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①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일 단위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또는 소집해제)예정일로 한다.

※ 대체복무요원의 최대 가입기간은 24개월로 함(만기해지 후 재가입 불가)

③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없다.

제6조【저축방법】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은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

③ 이 예금은 고객이 설정한 은행별 비과세 저축한도 범위내에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30만원 이하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단,「장병내일준비적금」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55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은행의 월 저축한도는 최고 30만원까지 설정 및 저축이 가능하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8%p를 제공한다. 다만, 적금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우대이율은 최고 연 0.6%p를 제공한다.

1. 「적금 자동이체 실적」해당될 경우 : 연 0.4%p
2.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해당될 경우 : 연 0.2%p
3. 「우체국예금 첫 거래 고객」일 경우 : 연 0.2%p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적금 자동이체 실적」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월 1만원 이상 자동이체 약정을 하고 자동이체 납입 횟수가 계약기간(가입일~만기일) 개월수의 50%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단, 적금 가입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1회 이상 자동이체 납입 시 실적으로 인정

③「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의 1일 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월평균 5만원 (총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 적금 가입기간 6개월이상일 경우 적용

④「우체국예금 첫 거래 고객」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예금을 처음 거래하는 경우로 가입 시점에 전산으로 확인하여 자동 적용한다.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잔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합하여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입한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
2. 스마트뱅킹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만기일에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 이율 적용)

제11조【부가서비스】

① 이 예금 신규 가입 시 우체국보험의 「무배당 우체국예금제휴보험 1종(휴일재해보장형)」 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무료 보험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1. 보험가입 기간은 1년으로 이 예금 최초 1회 제공하며, 이 예금 해지 시에도 보험계약은 유지된다.

※ 단, 이 예금을 가입일 당일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은 청약철회 됨

2. 보험담보위험, 보험금지급 등 보험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이 예금 가입일 당시 기준으로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월 3만원 이상 자동이체 약정 시 우체국쇼핑 할인쿠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분	주요내용
쿠폰혜택	o 우체국쇼핑 이용 시 3,000원 할인서비스 제공
제공시기	o 이 예금 가입일 다음월 5영업일 이내에 발송
제공조건	o 이 예금 가입월에 자동이체 약정(월 3만원 이상)을 하고 쿠폰 제공일까지 적금 및 자동이체 약정 유지고객 대상
제공방법	o 고객정보의 휴대폰 번호로 할인쿠폰 안내 메시지 (쿠폰번호) 발송
사용방법	o 우체국쇼핑 (http://mall.epost.go.kr) → 할인쿠폰 사용등록 → 할인 쿠폰번호 입력 (등록)
등록기한 사용기한	o 등록기한 : 쿠폰 발송일 ~ 발송일 이후 6개월 이내 o 사용기한 : 쿠폰 등록일 ~ 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
유의사항	o 우체국쇼핑 이용 시 인터넷 우체국 회원가입 필수 o 쿠폰은 1회 등록, 사용 가능하며 쿠폰 분할사용 및 재사용 불가 o 이 예금 중도해지 후 재 가입 시 부가서비스 제공 불가

③ 부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우체국 및 우체국과 제휴한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내용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2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으로 가입하고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에 적용하는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정기적금 6개월~1년 미만 기본이율을 적용 한다.

제13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1개월~6개월 미만으로 가입하고 만기 후 6개월 이내 해지 시에 적용하는 만기후이자율은 정기적금 6개월~1년 미만 기본이율을 적용한다.

제14조【특별중도해지】

① 적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한다.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의 사망, 의병전역,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에 따라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여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2. 의병전역 : 병적증명서(전역사유 '의병')
3. 입원 : 입원 확인서(3개월 이상) 또는 진단서

제15조【분할해지】

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

제16조【과세구분】

①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관련 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된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2.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제17조【재정지원금_1% 이자지원금 지급】

① '1% 이자지원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이자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적금 만기해지
2.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소집해제일)의 일치

※ 단, 적금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 적금의 만기일을 전역일로 간주

3. 만기 해지시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기재된 확인서 원본 제출

※ 확인서 : 전역증(군경력증명서),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중 택1

※ 단,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해지 시 모바일「나라사랑포털 App」에서 온라인 자격검증 서비스를 활용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가 우체국 스마트뱅킹에서 확인되는 경우 생략 가능

③ 만기 해지 시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추후 우체국에 재청구할 수 없다.

④ '1% 이자지원금'은 장병 목돈마련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⑤ '1% 이자지원금'지급 시행일은 2021년 10월 14일이며, 시행일 이후 만기도래하여 만기해지한 계좌 및 '23.12.31.까지 입금분에 한해서만 적용

제18조【제한사항】

① 이 예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을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신규 시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단,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가입 시 모바일「나라사랑포털 App」에서 온라인 자격검증 서비스를 활용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가 우체국 스마트뱅킹에서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② 이 예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 전용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가입 및 추가 납입이 불가하며 비과세, 재정지원금(1%이자지원금, 매칭지원금) 적용이 불가하다.

제19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 설정이 불가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 승계, 분할해지, 자동만기해지가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을 '25.1.1.까지 가입한 계좌는 1회에 한하여 비과세저축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 단, '25.1.1.까지의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이력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④ 이 예금의 신규일이 '25.1.2.이후인 계좌는 비과세저축 한도 변경이 불가하다.

⑤ 이 예금의 비과세저축 한도는 5만원 단위로만 설정이 가능하다.

※ 단, 이 예금을 '25.1.1.까지 가입한 계좌는 기존에 설정한 비과세저축 한도 유지 가능

제20조【재정지원금_매칭지원금】

① 매칭지원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 지원금으로, 적금 '납입건 별 원금'에 관련 법령(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비율)에서 정한 정부지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매칭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조건은 제17조(1% 이자지원금 지급)에서 규정한 지급 조건과 같다.

③ 매칭지원금은 우체국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 만기해지 시 우체국에 제출한 희망 계좌로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한다.

④ 매칭지원금은 정책 및 관련 법령 등 변경에 따라 시기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지원금액 변경내용은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및 우체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병역법 시행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매칭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 시행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단,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 전용 상품으로,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가입자의 경우 매칭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자율 적용 가입구간 변경에 따라 제7조 1항의 이자율 조견표(별지2) 변경됨.

부 칙

이 특약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24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2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